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한 철 우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O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,
- O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 변경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【제명 및 조문】

- O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른 정비
 - 「충청북도 시무의 위임조례」→ 「충청북도 시무의 위임 조례」
 - "~ 규정에 의하여" → " ~ 에 따라"

【권한 위임 사무 개정(안 별표)】

O 신설: 9건

<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>

- (경제정책과) 계량에 관한 사무(5건)

<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>

- (투자유치과) 산업단지 관태료 부과징수 등(2건)
- (교통물류과)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(1건)

<국가사무 지방이양: 국가사무(규칙) → 시도사무(조례)>

- (산림녹지과) 임업후계자의 선발·육성에 관한 사항(1건)

O 삭제:6건

<사무이양: 시도사무(조례) → 시군사무>

- (보건정책과)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(2건)
- (산림녹지과) 종·묘생산업 등록 등(2건)간선임도 설치계획(1건)

<사무폐지>

- (도로과)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(1건)

○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: 33건

- (경제정책과) 계량에 관한 사무(6건)
- (도 로 과) 도로관리에 관한 사무(25건)
- (교통물류과)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등(2건)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,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 변경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주요 내용은

첫째, 조례명을 "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"로 변경,

둘째, 상위법령 개정, 사무처리 효율화 및 국가사무의 지방이 양에 따라 9건의 권한위임사무를 신설하고, 사무이양 및 사무폐지에 따라 6건의 권한위임사무를 삭제하고, 33건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금번 개정조례안은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조례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, 상위법령 개정, 사무처리 효율화 및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권한위임사무 신설, 사무이양 및 사무폐지에 따른 권한위임사무 삭제,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